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具 河 書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그간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최근에 와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전환기에 서있는 우리나라의 보험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그중 손해보험의 경영적자의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개선문제와 우리보험시장을 향한 미국의 개방압력에 대처할 우리의 자세에 관하여 논급하기로 한다.

(1)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취약점과 대책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이 최초로 문을 연 1962년에 전국의 자동차보유 대수는 3만대에도 미달하였던 것이 1985년에는 1백만대를 돌파하여 20여년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손해보험시장에서 45.6%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손해보험 적자요인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뿌리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즉

1) 사고율이 너무 높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자동차사고율이 세계 1위로 알려져 있고 차량 4천 7백 80만대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1985년에 9,250명의 사망자를 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00만대에 7,600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고의 연간 상승률은 15%에 달하고 있다. 결국 사고율이 일본의 1.2%에 비해 우리나라는 12.5%로서 10배이상에 이른다. 일본은 정부의 투자로 자동차사고방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조원(약 5조원)의 예산으로 사고율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도의 수입보험료 4천 5백억원중 사고율을 25% 감소시킬 수 있다면 약 9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므로 사고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2) 의료수가가 너무 높다.

연간보험료의 약 50%가 병원 치료비로 지출되고 있는 우리의 의료수가는 일반환자의 경우보다 2~3배 높은 데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편승치료 내지는 과잉치료, 그리고 경상자까지 수가가

두가지 당면과제

높은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등에 원인이 있겠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 그러므로 의료비를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의료수가의 수준으로 접근시키게 수가규정이 필요하다.

3) 보상방법이 비현실적이다.

연간 소송건수는 1,000건을 넘는데 고소득자 위주의 Hoffman식 계산방법에 따른 보상방법 기준이 현실과 불일치하다. 그러므로 Leibnitz식 방법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보상금의 연금식 분할지급 방식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고차량의 수리비를 둘러싼 공장의 부조리를 막기위해 합리적인 손해사정을 위한 자동차 수리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4) 피해자의 과실을 과보호하고 있다.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피해자의 過失相計가 50%이상 허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무과실 운전자와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강요일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주의태만을 유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기부담불(deductible)의 확대로 계약자 스스로의 위험관리와 사고유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고율을 저하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5) 보험료의 상황경직성이 현저하다.

「인플레」에 따라 매년 손해보상액은 상승하는데 오랫동안 보험료의 인상조정을 불허하여 보험료가 무한보상상품에 부적합하다. 손해율이 97%에 달하고 연간 보험금의 지급이 거수보험료의 94%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보험료의 현실화가 요청되며 보험료의 차별화로 유한보상 상품을 개발하여 종합보

험의 유한화 내지는 세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6) 책임보험의 기능이 취약하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수준이 낮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임의보험의 부담이 87%이며 책임보험의 부담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은 사망보상한도가 2천만엔(14)으로서 우리의 2백만원에 비하면 약 50배의 수준이지만 책임보험의 적정부담이 국민소득의 10배수준인 30%라고 하지만 그 수준이 50%선까지 상향조정되도록 自賠責保險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자동차보험이 안고있는 제반문제를 과단성있게 개선해나가야만 모집과 관리의 분화, 기술인력의 전문화, 담보력 증대와 재보험의 효율화등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손보산업은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고 밝은 앞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험시장의 개방압력과 대처자세

최근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강도높게 시장개방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그것은 담배를 비롯한 상품시장과 더불어 광고 및 증권, 보험시장의 개방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물질특허와 지식소유권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작년도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가 36억불이라고 하지만 수년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계속 대미 적자를 유지해온 나라이고 무역외 수지면에서는 한국은 미국에 대하여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각종의 보호무역주의법안으로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시장개방압력은 공정성을 잃은 부당한 요구이다. 그것은 우리의 보험산업이 미국내의 보험기업과 미국민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고 있지 않고 무역거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보험을 국제무역 마찰의 代償으로 삼고있기 때문이다.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진출 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1968년말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의 7개 보험대리점이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왔으며 손해보험은 1968년 이래 AHA(AIU)와 CIGNA(AFIA) 2개사의 지점이 설치되어 화재특종보험등 제한적인 영업을 하여 오다가 80년대 이후 현재에는 해상 및 자동차보험에 이르기까지 국내 보험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영업인가를 받고 있어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90% 이상의 손해보험시장이 미국에 개방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와같이 외국지점의 설치활동 뿐만 아니

라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의 보험회사가 이미 국내 3개 보험회사의 주식을 15%에서 20%까지 취득하여 자본투자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미국의 對韓 보험시장 개방압력은 사실상 생명보험에 대한 개방요구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서 앞장 선 일본의 보험시장개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전후 부흥에 따라 공업화를 촉진하고 1964년에 선진국 동맹인 OECD에 가맹하여 무역과 자본자유화의 규약을 승인하였으나 생명보험시장의 개방은 유보하는 전제를 달았으며 생명보험은 제한업종으로 하고 1969년에 제2차 자본자유화조치에 있어서도 50%의 자유화를 허락했다. 1973년에 생보시장의 100% 자유화 인가조치에 있어서도 보험상품과 판매조직 면에서 일부 제한조건을 두고 있고 1979년에 와서야 비로소 이러한 제한조건을 없애고 국내의 보험회사와 동등한 취급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일본은 보험시장의 개방에 있어 선진국이 진입한 이후에도 신중을 기해 왔고 그것도 80년대에 와서야 완전한 개방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외국의 보험기업이 진입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국내보험시장의 잠식과 지배가 우려된다. 우리의 보험산업이 근년에 크게 발전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외형성장에 비해 내적충실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의 세대가입률은 30% 수준으로 일본이 1973년에 생보시장을 개방할 당시의 세대가입률이 89%에 달하고 있는데 비하면 크게 못미치고, 우리 생명보험회사의 시장확보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외국제품에 대한 선호도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미개척의 우리시장에 진입한 외국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경우 국내 시장의 잠식과 더불어 기존 하위회사와 경영부실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국내 생보사의 모집인과 우수인력의 스카우트전과 과당경쟁이 전개되어 모집질서의 문란을 초래하여 사업비 증가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 가운데 세차게 밀어닥치는 개방체제의 물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자세가 요구된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격렬한 경쟁 속에 발전을 기약해나가기야 할 우

리 기업은 종전의 안이한 자세에서 진취적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다.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보험산업의 경영전략으로서 당면과제를 간추려 보면 인력의 전문화와 자질향상, 홍보활동의 강화와 소비자교육의 전개, 매력있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서어비스의 개선, 그리고 판매조직의 강화와 업무의 자동화 등 기업 스스로의 발전적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한편 보험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업의 감독과 건전한 육성이라는 두가지 임무를 가진 당국의 보험정책은 난국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기본적으로 과거의 온실적 보호정책에서 탈피하여 보험사업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자율화를 지향하여 창의와 능률을 존중함으로써 기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높여서 보험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명보험의 개방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 정부는 생보산업의 특수성과 그 국민경제적인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국의 압력을 불가피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조급히 시장개방을 해서는 안될 것이며 앞으로 신중하게 단계적인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 이래 우리 국내시장의 협소와 기업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국내에 신규회사의 설립인가를 불허하여 과당경쟁을 억제하여 왔으며 또한 80년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생보사의 運營利差損이 8백억원에서 1천억원을 넘고 있으며, 손보에 있어서도 자동차보험과 재보험 거래에 있어 막대한 결손을 내고 있는 사정 등 우리의 어려운 실정을 정부는 미국 당국에 올바르게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에 대한 우리 보험시장의 성급한 개방은 일본을 비롯한 다른나라들의 개방요구를 초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여하튼 국제간의 공정거래를 이유로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보험시장의 개방까지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그들의 생보시장에 비하여 50분의 1의 규모에 불과한 한국의 생보시장을 개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강대국인 미국이 아직 성장기반이 약한 약소국가로부터 특혜를 강청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다름없으며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명분없는 간섭적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